

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도시브랜드담당관)

제출일 : 2020. 11.

1. 제안이유

- 하남시 브랜드 활용 확산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징물 조례에 리뉴얼한 심볼과 캐릭터를 적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[별표2]의 이미지 및 내용 일부개정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리뉴얼한 심볼과 캐릭터를 적용하기 위해 조례 [별표2]의 이미지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